

202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0. 11. 16.

202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호 제159호

제출연월일: 2020. 11. 16. 제 출 자: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O「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O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3건으로 아래와 같음

연번	사업명	소관부서	비고
1	성동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마을자치분권과	
2	연산 다목적회관 조성사업	마을자치분권과	
3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	기술지원과	

O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m²,천원)

일련 번호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고
		사업별개요참조					

O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m²,천원)

일련		재 산 표 시		기준가격	가격 처분	처분사유	비고
번호	구분	소 재 지	수량	ノロゼイドラ	시기	시판기표	P1-12-
		해당없음					

3.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m²,천원)

구분	사업명	위치	면	.적	기준가격	비고
, 4	1 8 0	전 38,880 5,594.08 12,414,056 센터 조성사업 성동면 삼산리 164-4번지 1,983 688.08 1,894,150 회관 조성사업 연산면 청동리 127-91번지 2,324 540 1,777,732 합단지 조성사업 부적면 덕평리 산50-1번지 등 11필지 34,573 4,366 8,742,174	1,1			
취득	3건		38,880	5,594.08	12,414,056	
	성동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1,983	688.08	1,894,150	
,,,,	연산 다목적회관 조성사업		2,324	540	1,777,732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시업		34,573	4,366	8,742,174	
a) H	0건					
처분						

4. 사업별 개요

① 성동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 취득 개요

O 사업목적 및 용도

- 목적 :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속적 교류를 위한 공간 조성

- 용도 : 주민공동이용시설(1층:홍보전시실,휴게실,동호회실/

2층:주민프로그램실,다목적활동실,강의실

O 사업기간: 2018. 1. 30. ~ 2020. 12. 31.

O 취득위치: 충남 논산시 성동면 삼산리 164-4번지 일원

○ 소요예산: 3,716,023천원 (국비70%, 지방비30%)

(단위:천원)

총사업비	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용역비	기타	비고
3,716,023	70,623	3,361,882	221,209	-	62,309	

○ 사업규모: 부지면적 4,939㎡, 연면적 688.08㎡(지하 1층, 지상 2층)

O 취득재산 대상내역

(단위:m²,천원)

일련 번호	지목	재 산 표 시 소 재 지	면적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고
		합계	2,671.08	1,894,150			
1	토지	성동면 삼산리 149-3	1,626	24,552	2018.6.18.	성동면	
2	토지	성동면 삼산리 149-4	357	6,033	2018.8.23.	농촌중심지	
3	건물	성동면 삼산리 164-4	688.08	1,863,565	2020.12.	활성화사업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O 토지매입: 18년 6월 ~ 8월

O 설계용역: 17년 1월~ 18년 12월

O 공사시행: 19년 3월~ 20년 12월

■ 위치도



■ 현황사진



② 연산 다목적회관 조성사업

■ 취득 개요

O 사업목적 및 용도

- 목적 :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속적 교류를 위한 공간 조성

- 용도 : 주민공동이용시설(1층: 체력단련실, 유아휴게실, 동아리실 /2층: 주민프로그램실, 다목적활동실, 강의실)

O 사업기간: 2019. 5. 27. ~ 2023. 12. 31.

O 취득위치: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청동리 127-91, -92, -93, -207번지 일원

○ 소요예산: 2,009,332천원 (국비70%, 지방비30%)

(단위:천원)

총사업비	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용역비	기타	비고
2,009,332	279,332	1,640,000	90,000	-		

O 사업규모: 부지면적 2,324㎡, 연면적 540㎡(지상 2층)

O 취득재산 대상내역

(단위:m²,천원)

일련		재 산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취득사유	비고
번호	지목	소 재 지	면적	716719	시기	1197111	
		합계	2,864	1,777,732			
1	토지	연산면 청동리 127-91	512	54,221	2020.9.		
2	건물	연산면 청동리 127-92	540	1,640,000	2023.12.	연산면	
3	토지	연산면 청동리 127-92	840	42,252	2020.9.	기초생활거점	
4	토지	연산면 청동리 127-93	909	39,451	2020.9.	육성사업	
5	토지	연산면 청동리 127-207	63	1,808	2020.9.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O 토지매입: 20년 9월 ~ 10월

○ 설계용역: 19년 5월 ~ 21년 12월○ 공사시행: 22년 3월 ~ 23년 12월

□ 위치도



□ 현황사진



③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

■ 취득 개요

- O 사업목적 및 용도
 - 목적 : 논산시 원예농산물의 산업혁신 필요,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촌노동력 부족에 따른 ICT기반 구축 필요
 - 용도 : 논산시 과채류·엽채류 등 지역특화산업 첨단복합단지 및 청년농업인·기존농업인·귀농인 전문기술교육 거점 조성
- O 사업기간: 2021년~2025년
- O 취득위치: 논산시 부적면 덕평리 산50-1번지 외 11필지
- 소요예산: 12,750백만원(도비50%,시비50%)

연도	사업비 (백만원)	내 용
합계	12,750	
2021년	2,000	부지매입 34,573㎡
2022년	3,500	스마트 딸기육묘 증식포(8,300㎡), 원예실증포 단지(1,700㎡)
2023년	2,000	농업인·귀농인·청년농업인 실습교육장(1층 450㎡, 2층 350㎡)
2023년	600	저온저장 시설 (201㎡, 각 67㎡)
2023년	1,200	지원동(1동 396㎡)
2024년	750	스마트 농업관 (창고형 330㎡ 및 작업실습장 990㎡)
2024년	2,000	농업과학분석센터(지하 1층 330㎡, 지상 1·2층 330㎡)
2024~5년	700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 O 사업규모: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 사업 1식
- 취득재산 대상내역 : 토지 34,573㎡, 건축 4,366㎡(6개동)

- 취득예정 토지 세부내역

(단위:m²,천원)

연		재 산 표 시		_]]]	취득	aruo	
번	지목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시기	취득사유	비고
		합계	34,573	692,174			
1	임	부적면 덕평리 산50-1	11,107	106,628	2021.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사업	
2	전	부적면 덕평리 387-1	1,745	65,089	2021.	"	
3	대	부적면 덕평리 387-2	221	10,962	2021.	"	
4	전	부적면 덕평리 387-3	5,276	167,777	2021.	"	
5	전	부적면 덕평리 387-4	5,226	166,187	2021.	"	
6	대	부적면 덕평리 387-5	585	29,016	2021.	"	
7	전	부적면 덕평리 387-6	476	15,137	2021.	"	
8	임	부적면 덕평리 산51-2	6,121	58,762	2021.	"	
9	전	부적면 덕평리 44-1	1,190	18,802	2021.	"	
10	전	부적면 덕평리 44	840	13,272	2021.	"	
11	전	부적면 덕평리 395-106	417	9,466	2021.	"	
12	전	부적면 덕평리 395-105	1,369	31,076	2021.	"	

- 취득예정 건물 세부내역

(단위:m²,천원)

연번	위 치	시 설	규 모	기준가격	취득 시기	비고
	합계	6동	4,366	8,050,000		
1	부적면 덕평리 산50-1	원예실증포 (유리온실)	1,650 (지상1층)	1,500,000	2022년 하반기	
2	부적면 덕평리 산50-1	교육장	800 (지상2층)	2,000,000	2023년 하반기	
3	부적면 덕평리 산50-1	저온저장실	200 (지상2층)	600,000	2023년 하반기	
4	부적면 덕평리 산50-1	지원동	396 (지상2층)	1,200,000	2023년 하반기	
5	부적면 덕평리 산50-1	스마트 농업관	330 (지상2층)	750,000	2024년 하반기	
6	부적면 덕평리 산50-1	농업과학 분석센터	990 (지하1층/ 지상2층)	2,000,000	2024년 하반기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19년 10월 28일 : 균형발전사업 시군 경쟁공모사업 선정
- O 2020년 04월 3일 ~ 2020년 10월4일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2020년 07월 29일 : 사업최종확정
- 2021년 03월 ~ 09월 : 토지매입
- O 2022년 01월 ~ 2024년 06월 : 설계용역(단계별 설계 용역)
- O 2022년 06월 ~ 2025년 12월 : 착 공 (사업 추진 단계별 착공)

■ 위치도



■ 현황사진



관 련 법 규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2. 예산의 심의·확정
- 3. 결산의 승인
-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5. 기금의 설치·운용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 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 ·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